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58

발의연월일: 2021. 1. 13.

발 의 자:유정주·권인숙·김홍걸

서동용 • 신영대 • 이병훈

이상현 • 이수진 • 임오경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주요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 1위를 차지한 이래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우상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안정망은 매우 부실한 상황임.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스트레스 대처 미숙과 사회적 인지도로 인하여 심리적·정신과 치료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대중문화산업이 영세한 곳이 많아 국가가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중문화 예술산업 현장에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 17조 등).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제2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4항에"를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로 한다.

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 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한 자
- 2.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원센터) ① (생 략)	제17조(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
	승)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2
업무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의 교육) ① ~ ④ (생 략)	의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
	유)
<u><신 설></u>	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
	살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
	화예술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
	<u>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u>
	반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⑤</u>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	<u>⑥</u>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	
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 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 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 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